

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공고

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·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10일
보건복지부장관

1. ‘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’란?

-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,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*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(건강친화기업 인증) 근거

《 건강친화제도의 예시 》

- 건강친화경영: 경영진의 기업 내 건강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노력, 경영진의 근로자 건강 중요성 인식, 건강친화제도 담당조직 구성, 건강친화제도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, 근로자를 위한 건강휴가·휴직 지원제도, 기업 전반의 건강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
- 건강친화문화: 건강친화제도 운영 시 직원 의견 및 요구 반영, 기업 내 취약 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제도 시행,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, 건강증진 거버넌스의 구축·운영 등
- 건강친화활동: 직원 건강 현황 파악 및 위험요인 분석 진행, 기업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, 직원 대상 효과 환류 등

2.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

-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기업으로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법인 및 단체
 - * 개별 사업장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 단위로 신청
 - 「상법」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
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
 -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「소득세법」 및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

《 기업구분 》

구분	관계법령
대 기업	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중견기업	「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
중소기업	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
공공기관	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
기타 법인 및 단체	위 네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인·단체

*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한함

-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최소기준*을 충족해야 함

* ‘서식 제2호’를 통해 최소기준 충족 여부를 자가 판단하여 신청해야 함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- 공고 및 신청기간: '24. 5. 10. ~ 6. 10. 12:00(정오)
- 신청방법: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
 (<https://www.khepi.or.kr/ace/hfwp/> > 건강친화인증 > 인증신청 하단의 ‘신청’ 버튼 클릭*)
 * ‘신청·접수’ 메뉴는 신청기간 동안에만 활성화
 - 기업별 신청페이지 내 관련 서식 직접 업로드
- 결과발표: 2024. 11월(예정)
- 인증심사 비용: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참여 독려를 위하여 당해 연도(24년) 면제

4. 제출서류(별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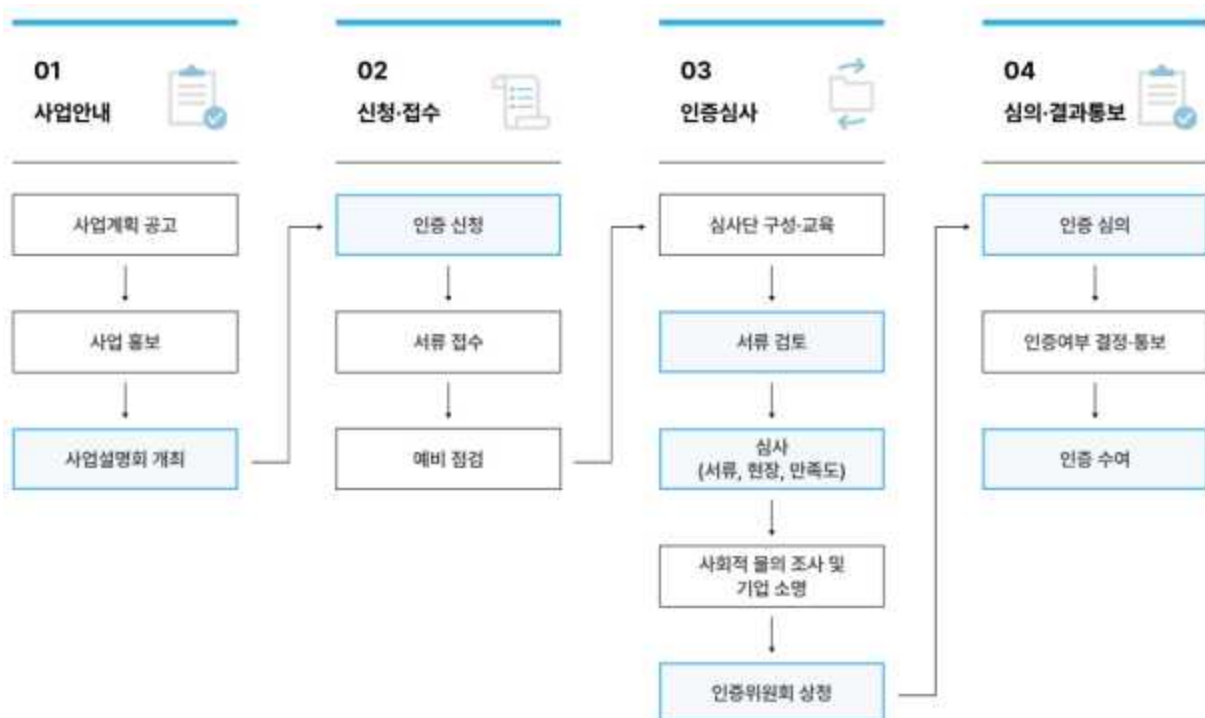
- 인증신청서(서식 제1호)
-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최소기준 점검결과(서식 제2호)
-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(서식 제3호)
-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(서식 제4호)
 - 기업유형별 : 대기업형, 중견기업형, 중소기업형
-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 서식(서식 제5호)
- 사업자등록증
-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(해당 기업에 한함)

<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>

-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 > 알림 > 공지사항 > 공고
-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(<https://www.khepi.or.kr/ace/hfwp>) > 건강친화인증 > 인증신청 또는 알림마당 > 자료실

5.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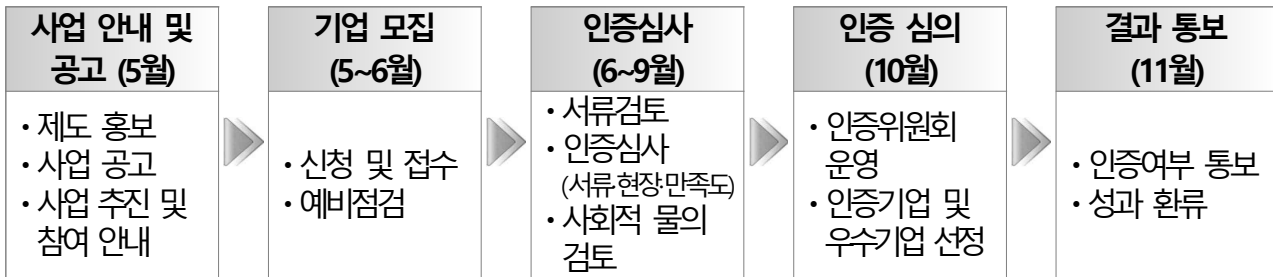
- 인증 절차



- 「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3조에 의거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(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)에서 접수·심사·평가 업무 수행
- 인증심사 결과를 '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'에 상정하여 심의
- 인증기업(기관)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

○ 추진 일정

[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 추진 절차]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6. 인증 기준

○ 심사항목: 건강친화경영, 건강친화문화, 건강친화활동, 직원만족도 등

○ 인증통과기준

- (공통사항) 건강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건강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*을 준수하여야 함

*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등

- 기업 유형별 통과기준

[합격 총점]

대기업, 공공기관	중견기업, 기타 법인 및 단체	중소기업
80점 이상	75점 이상	70점 이상

[심사 부문별 최소기준 점수]

심사부문	대기업, 공공기관	중견기업, 기타 법인 및 단체	중소기업
건강친화경영	30점 이상	25점 이상	25점 이상
건강친화문화	12점 이상	10점 이상	10점 이상
건강친화활동	12점 이상	10점 이상	10점 이상

- 심사항목 및 배점

심사부문	심사영역	심사지표	심사배점		
			대기업, 공공기관	중견기업, 기타 법인 및 단체	중소 기업
가. 건강 친화 경영 (40)	1. 리더십	1-1. 경영방침 수립·이행	3	3	4
		1-2. 경영진의 의지	3	3	7
		1-3. 건강친화경영 인식(경영진 인터뷰)	5	5	5
	2. 자원	2-1. 조직 구성	5	5	3
		2-2. 예산 편성	5	5	5
		2-3. 환경조성	3	3	6
	3. 제도관리	3-1. 근로시간 관리제도	3	3	4
		3-2. 건강휴가 지원제도	4	4	4
		3-3. 복직·적응 관리	5	5	-
		3-4. 인센티브	4	4	2
나. 건강 친화 문화 (20)	1. 인식 및 소통	1-1. 건강친화문화 인식(근로자 인터뷰)	5	5	5
		1-2. 직원 소통	4	4	6
	2. 사회적 책임	2-1. 건강형평성 제고	4	4	3
		2-2.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	3	3	-
		2-3.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운영	4	-	-
		2-4. 지역자원 발굴 연계	-	4	6
다. 건강 친화 활동 (20)	1. 계획수립	1-1. 건강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	2	2	4
		1-2. 계획수립 및 목표설정	6	6	4
	2. 시행 및 효과평가	2-1. 시행 및 참여	8	8	8
		2-2. 효과평가 및 환류	4	4	4
라. 직원만족도	직원만족도	직원만족도	20	20	20
가+나+다+라 합계			100	100	100
마. 가산점	가산점	담당인력의 전문성	2	-	-
		담당인력 교육	-	4	4
		직원 가족 건강 지원	-	-	4
		여가친화인증	2	2	2
총점 = 가+나+다+라+마*			100	100	100

* 가산점 포함 최대 점수 100점

7. 심사 방법

- 심사절차: 서류검토(1단계)와 인증심사(직원만족도 조사 포함)(2단계)로 구성

[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 절차]

구분	서류검토	인증심사		
심사 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증심사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증심사단 		
심사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증신청 기업 (인증신청 최소기준을 충족한 신청 기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류검토 통과 기업 		
심사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출 자료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장 방문을 통한 종합 심사 		
심사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업 자체점검 결과 및 제출 자료 확인 · 미제출 사항 확인 및 인증심사를 위한 보완사항 등 정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류심사 및 담당자 확인 · 경영진 및 직원 인터뷰 · 현장 점검 등 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직원만족도 조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온라인 직원 만족도 조사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원만족도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온라인 직원 만족도 조사
직원만족도 조사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온라인 직원 만족도 조사 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회적 물의 사항 검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별 사회적 물의 확인 · 전문가 협의체 검토에 따라 필요시 기업별 소명 청취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사회적 물의 사항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별 사회적 물의 확인 · 전문가 협의체 검토에 따라 필요시 기업별 소명 청취
사회적 물의 사항 검토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별 사회적 물의 확인 · 전문가 협의체 검토에 따라 필요시 기업별 소명 청취 				

*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8. 인증 유효기간

-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,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*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의3, 시행령 제9조의2

9. 인증 기업·기관 특전

- 인증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,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기업 홍보 기회 제공(언론 보도, SNS 홍보, 영상제작 등)
- 취업포털사이트 내 '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' 운영으로 우수인재 채용 기회 제공
-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지원

- 정부인증제도(여가친화인증) 참여 시 가산점 부여
- 건강친화인증 로고 사용
 -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
 - *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, 시행령 별표5
- 그 외 인증기업 대상 추가적인 특전 확대 지속 추진 중

[건강친화인증의 표시]



10. 신청 유의사항

-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인증사무국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, 선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
 - *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, 즉시 취소 및 공표
- 인증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
- 본 신청 및 인증절차 중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- 신청서 및 운영실적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별도 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서류심사 전이라도 인증신청 최소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통하여 탈락될 수 있음
- 인증 후에라도 인증 최소기준 위반 시 인증 취소 가능
- 상기 공고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11. 문의사항

○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

- 전자우편: healthfriendly@khepi.or.kr

- 대표전화: 02-3781-3554, 3546

- 홈페이지(<https://www.khepi.or.kr/ace/hfwp>) > 알림마당 > Q&A 게시판

* 본인인증 필요

※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온라인 사업 안내

• 개최일시 : 2024. 5. 10.(금) ~ 6. 10.(월) 12시(정오)

• 참여방법 : <https://www.khepi.or.kr/ace/hfwp>

> 건강친화지원 > 사업 안내

• 참여대상 :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국민 누구나

• 주요내용 :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등